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siness scope of Internet Primary Banks

정 상 표*
Jung, Sang-pyo

목 차

- I. 서론
- II.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징
- III. 업무범위에 관한 현행 제도 및 논의
- IV. 업무범위에 관한 법적 제안
- V. 결론

국문초록

ICT, IT 및 FinTech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대중화 속에서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의 하나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들고 있고, 최근 2015년 금융위원장 및 각 금융당국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장기적 과제로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의 방문 없이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간의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터넷뱅킹과 더불어 그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인터넷뱅킹은 단순히 은행 업무 중 일부분만

논문접수일 : 2015. 09. 30.

심사완료일 : 2015. 10. 21.

게재확정일 : 2015. 10. 22.

* 법학박사(수료) · 충남대학교 법학과

을 서비스로 운영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차이와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 과정에서 모기업의 전문성, 자본금,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거나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인가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일반 은행과 같은 영업행위 규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면을 통해야만 하는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되 심사 및 인가 과정에서 특성을 파악하여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한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업무범위를 인가과정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자는 것에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은행산업의 혁신으로서, 이미 세계경제의 흐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환경에 맞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은행경쟁력에서도 뒤처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중요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업무범위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인터넷전문은행, 해외은행, 일반은행, 인터넷뱅킹, 업무범위

I. 서론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설립¹⁾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²⁾들이 설립초기에는 수익성이 저조³⁾ 하였고 폐업하는 사례도 많았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자

산규모를 꾸준히 키우면서 고객확보에 성공하였고, 최근 기존 은행에 위협이 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의 하나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들고 있고, 최근 2015년 금융위원장 및 각 금융당국 등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장기적 과제⁵⁾로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ICT,⁶⁾ IT⁷⁾ 및 FinTech⁸⁾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대중화 속

- 1)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 1995)가 설립된 이후 영국 및 일본, EU,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확산 되었고 국내의 경우 2001년 중 SK 및 롯데 등 대기업과 약 20여개 벤처회사가 공동으로 V-bank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수익모델 및 법적 미비 등으로 중단한 적이 있다(“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 자료 참조.)
- 2)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및 CD, ATM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에는 인터넷만을 영업채널로 한다는 의미에서 Internet Only Bank, Online Bank, Pure Play Internet Bank라고도 하였으나, 지금은 인터넷을 주요 채널로 하고 오프라인채널을 보완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Internet Primary Bank, Online Primary Bank라고 하며, 기존 은행이 채널 다각화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과는 구별된다.
- 3) 미국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균 ROA(Return On Assets(자산수익률)) :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치로 특정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와 ROE(Return on Equity(자기자본이익률)) : 기업이 자본을 이용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2003년 기준으로 각각 0.7%, 8.8%로서 미국 은행 평균 ROA 1.0%와 ROE 10.0%에 비하여 낮다.
- 4)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은 2015년 1월 15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한바 있다.
- 5) 은행 분야 중장기 검토과제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금융위원회, 2014. 7. 24)

근거	제안 내용	검토 의견
은행법 제8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리스크와 무관하게 최소자본금 등의 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어려움	- IT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흐름에 대응할 필요 -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은행업 인가단위의 적정성 및 실명확인 방법개선 합리화 등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

- 6)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한 용어로, 우리말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ICT는 자동화·전산화·시스템화를 위한 것이지만 크게는 정보사회의 구축이 목표이다.
- 7) IT(Information Technology) :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 8) FinTech

에 저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은행과 동일한 범위의 영업이 가능한 만큼 일반 은행과 같은 영업행위 규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및 개인정보보호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보안상 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대면을 통해야만 하는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되 심사 및 인가 과정에서 특성을 파악하여 규제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은행과 구분되는 특성을 살펴본 후,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현행 제도를 살펴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환경에 적합한 업무범위 설정이 되도록 은행법 개정을 포함한 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징

1. 인터넷뱅킹과의 비교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을 주요 채널로 하고 오프라인채널을 보완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Internet Primary Bank, Online Primary Bank라고 부르며,

- ① 개념 :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클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환경경제사전), IT를 기반으로 하여 간편하게 제공되는 송금·결제·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 ② 예시 : 상거래(전자상거래), 통신(인터넷통신), 교육(온라인교육), 문화(온라인게임), 금융(핀테크)를 들 수 있다.
- ③ 태생 :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설립된 SFNB라는 인터넷은행과 1998년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결제수단인 페이팔(Paypal),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P2P대출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겠다.
- ④ 유형 : 온라인 결제서비스(알리페이·페이팔·텐페이·아마존페이먼트), 전자지갑 (글월렛·패스북), 온라인 소액대출 서비스(알리파이낸스), 온라인은행(헬로뱅크, 소니파이낸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이 된 적이 없는 신개념의 새로운 은행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은행이 채널 다각화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과는 구별된다. 즉, 인터넷뱅킹은 인터넷보급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일반은행의 업무중 단순 이체 및 거래조회 등의 업무 일부를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로 운영되는 은행으로서 기존 은행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업무를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업무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근거로 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거래안전 등을 들 수 있겠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로 운영되면서 인터넷뱅킹과는 달리 은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므로 금융소비자의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안전장치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2. 일반 은행과의 구분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채널 또는 전자매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오프라인(offline)지점 또는 영업네트워크를 갖춘 일반은행과 구별되고, 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을 영업기반으로 가진다는 점에서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일반 은행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은행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면서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일반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설립요건과 낮은 유지비용으로 은행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설립과 운영에 용이하다. 또한 시간과 지역에 대한 제약 없이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한 은행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점포로 운영하기 곤란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군에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듯이 특성화된 영역의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의 서비스를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겠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의 비교]⁹⁾

	일반은행(Traditional Bank)	인터넷전문은행
핵심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점(branch) - 대면 채널을 주 채널로 하고 채널 다각화 차원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 -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 온라인채널의 중요성은 증대 추세 - 지점망이 약한 일부 은행의 경우 인터넷 채널을 독립된 사업부 형태로 운용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인터넷/모바일) - 기본적으로 대면 채널은 운영하지 않고, 인터넷채널을 주 채널로 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소점포(Small Office)를 운영¹¹⁾
영업시간	- 평일 9시~16시	- 24시간 365일
상품	- 온/오프라인 상품 구분	- 구분 없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Banking Service - 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도 제공. 하지만 인터넷 채널을 통하면 상품의 종류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금리·수수료 측면에서도 대면 채널 제공 상품과는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소매금융 특화 - 각각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가 상이 - 예금·대출에 특화 또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Full Banking Service 제공 - 금리·수수료 측면에서 일반은행 대비 경쟁력 보유
기타	- 대면서비스를 통한 전문성	- 비용감소를 통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터넷뱅킹 및 일반은행과의 비교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외 사례와 국내논의, 그리고 우리환경에 적합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려면 업무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해 논해 보고 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9)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국내이슈 점검(김경환,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운영사례와 국내도입시의 설립규제”, 삼성증권·법무법인 민후, 2015, 9면 참고).

10) ex) HSBC Direct, Capital One 360

11) ex) Sony Bank의 Mortgage Plaza

Ⅲ. 업무범위에 관한 현행 제도 및 논의

1.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해외 사례

해외 주요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 과정에서 모기업의 전문성, 자본금,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거나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인가하고 있다.¹²⁾ 한편,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중 모든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개인금융에 특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자산관리, 일본은 지급결제, 유럽은 방카슈랑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¹³⁾ 이하에서는 미국, 일본 및 유럽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규제 및 업무범위를 각 국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미국

(1) 인가 관련 법률 및 지침

미국은 비즈니스 모델의 한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라이선스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은행 인가조건 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가 지침을 2001년 별도로 마련하였다. 인가관련 법률 및 지침으로 National Bank Act, Community Reinvestment Act, Bank Service Act가 있다.¹⁴⁾

(2) 인가 기관

인가 기관으로 통화감독청(OCC), 저축기관감독청(OTS) 및 각 주별 인가 기관들이 있다. 인가기준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 단, 안정성 등 인터

12) 서병호,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5, 53면.

13) 서병호, 위의 연구보고서, 54면.

14) 천대중,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및 전망”, WFRI 금융경제 포커스, 제20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 4면.

넷전문은행 고유의 이슈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Chartering)는 통화감독청과 각 주(州)의 은행청이 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존 은행의 제도와 동일하다. 연방상업은행(Federally chartered commercial bank) 및 연방저축기관(Federally chartered savings institution)의 경우 통화감독청이, 주인가상업은행(State-chartered commercial bank) 및 주인가저축기관(State-chartered savings institution)은 각 주 은행청이 인가 업무를 각각 담당 한다.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감독은 통화감독청, FDIC 및 연방준비위원회(FRB)가 담당하고 있다. 연방상업은행과 연방저축기관은 통화감독청이, 주인가상업은행 및 주인가저축기관은 FDIC 및 FRB가 각각 담당한다.

(3) 인가 절차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절차는 ① 서류준비 ② 자본조달(주주모집) ③ 인가지원 및 심사 ④ 은행 설립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계획서에는 재무계획, 리스크 관리방안, 시장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본조달계획에는 최소 3년 또는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는 시점까지의 자본조달 및 자본운용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통화감독청의 인가기준(CFR 6.4(b))에 따르면 최소 첫 3년 동안 기본자본비율(Tier1 capital to asset leverage ratio)이 8%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한편, 인가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뱅킹업무수행에 따른 리스크(electronic banking concerns)'를 중점적으로 심사 한다. 통화감독청은 벤더관리, 정보시스템, 웹링킹, 암호화, 침입탐지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¹⁵⁾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주로 비은행금융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였으나 일부 비금융기업들도 'Industrial Loan Company(ILC)' 인가를 받아 인터넷전문은행을 영위 중에 있다.

(4) 업무범위

미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검토 과

15) 천대중, 앞의 논문, 11면.

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전문성, 자본금 등을 감안하여 업무범위를 지정하며 동 업무만 수행하는 전제 하에 조건부 인가를 하고 있다. 사례로, 중기대출에 특화된 Aerobank의 경우 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금융에 특화된 경우가 기업금융에 특화된 경우보다 많으며, 기업금융에 특화된 은행만 투자 상품을 취급한다. 사례로, 증권사가 설립한 Charles Schwab Bank는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별 업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¹⁶⁾

은행명	업무
① Charles Schwab Bank (증권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② Ally Bank (자동차 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법인 대출(법인 대출은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료, 자동차 리스 비용 명목의 대출이다).
③ Discover Bank (카드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신용카드 발급
④ American Express Bank (카드사)	: 개인 예금 수신, 법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법인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⑤ Nationwide Bank (보험사)	: 개인 예금 수신, 법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신용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⑥ Sallie Mae Bank (학자금 대출 기관)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⑦ Everbank (독립계)	: 개인 예금 수신, 법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법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신용카드 발급
⑧ Bofi Federal Bank (독립계)	: 개인 예금 수신, 법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법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을 보면 예금 수신, 대출, 모기지 상품, 투자 상품, 부동산 임대, 자동차리스, 법인 대출 등 매우 넓은 범위의 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본업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펼친 기업의 예로 미국 최

16) 서병호, 앞의 연구보고서, 55-57면을 참고하여 재구성.

대의 학자금 대출회사인 Sallie Mae를 들 수 있는데, Sallie Mae는 학자금 대출 등 교육관련 대출을 특화한 Sallie Mae Bank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회사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외부적 환경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⁷⁾

나. 일본

(1) 인가 관련 법률 및 지침

일본의 인가 관련 법률 및 지침으로는 은행법(인가관련), 독점금지법(은행 지분소유 관련), 범죄에의한수익의이전방지법(실명확인 관련)을 들 수 있고 기타 출자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겠다. 일본은 2000년 타 업종에 의한 은행업 진입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인가 및 감독 지침 마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을 도모 하였다.

(2) 인가 기준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반 은행과 동일하다. 2000년 4월 금융감독청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무점포 은행의 영업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가 기준 초안을 마련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면허를 부여하지는 않았고, 인가지침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은행법의 최저자본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주요 인가 기준은 일반은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¹⁸⁾

(3) 업무범위

일본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지안정화를 위한 계획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결정 후 타 업무를

17) 이광열·강환우·김기범·박광빈·조민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성공전략과 해결 과제”, Issue Monitor, 삼정KPMG경제연구원, 2015, 10면.

18) 천대중,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및 현황”, 주간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50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 7면.

취급하려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사례로, 모기업이 무선통신 업체인 Jibun Bank는 개인대상 모바일뱅킹에 특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모든 은행이 개인금융에 특화한 가운데 투자상품과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보험 상품이나 신용카드는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례로, 인터넷 쇼핑몰 회사와 은행계 보험사가 합자한 Rakuten Bank는 인터넷 결제 및 송금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별 업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¹⁹⁾

은행명	업무
① Japan Net Bank (은행+비은행 및 비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법인 대출, 투자 상품 취급.
② Sony Bank (은행+비은행 및 비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신용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③ SBI Sumishin Bank (은행+비은행 및 비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④ Jibun Bank (은행+비은행 및 비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⑤ Daiwa Next Bank (비은행 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⑥ Aeon Bank (비은행 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⑦ Rakuten Bank (비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보험 상품 취급
⑧ Seven Bank (비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핀테크 기업과 은행의 협업 사례로 Japan Net Bank를 살펴보면, Japan Net Bank의 경우 일본의 대형은행인 스미토모미쓰이은행(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과 야후재팬(Yahoo Japan)이 공동으로 출자한 은행인데, 출자 당시 야후재팬 포털은 상품거래에 있어 결제서비스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Japan Net Bank의 설립을 계기로 소

19) 서병호, 앞의 연구보고서, 55-57면을 참고하여 재구성.

비자들은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가입된 고객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인터넷은행 계좌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개선 방식 덕분이었다. 결국 야후재팬은 늘어난 결제수수료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²⁰⁾

다. 유럽

유럽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전문성,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한다. 사례로, 모기업이 자동차 회사인 BMW Bank는 자동차 구매 및 리스와 연계된 금융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은행이 개인금융에 특화한 가운데 방카슈랑스와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기업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다. 사례로, BNP Paribas 은행의 사업부서인 Hello Bank는 해외 개인금융에 특화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방카슈랑스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별 업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²¹⁾

은행명	업무
① Hello Bank (은행계 금융그룹)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신용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② Comdirect Bank (은행계 금융그룹)	: 개인 예금 수신,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보험 상품 취급
③ Boursorama (은행계 금융그룹)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신용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④ BforBank (은행계 금융그룹)	: 개인 예금 수신, 투자 상품 취급, 보험 상품 취급
⑤ Egg Bank (비은행 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모기지 상품 취급, 보험 상품 취급
⑥ Virgin Money (비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모기지 상품 취급, 투자 상품 취급, 신용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20) 이광열 · 강환우 · 김기범 · 박광빈 · 조민주, 앞의 연구보고서, 10면.

21) 서병호, 앞의 연구보고서, 55-57면을 참고하여 재구성.

⑦ BMW Bank (비금융회사)	: 개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신용카드 발급, 보험 상품 취급
⑧ AlderMore (독립계)	: 개인 예금 수신, 법인 예금 수신, 법인 대출, 모기지 상품 취급
⑨ Fidor Bank (독립계)	: 개인 예금 수신, 법인 예금 수신, 개인 대출,

특화된 사업으로 차별화 전략을 펼친 BMW Bank of North America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동차 제조회사인 모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리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출이나 오토론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크레딧카드 사업을 영위하여 고객이 BMW Reward를 사용한다면 마일리지 적립으로 포인트를 적용하여 자사의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차별화 전략 덕분에 이 회사는 꾸준히 순이익을 창출하며 성장하고 있다.²²⁾

2. 우리나라 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현행 제도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은행법 및 은행법시행령에서 업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유업무, 경영업무,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외환은행 지점의 경우도 제도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범위 영위가 가능하다.

가. 고유업무

고유업무는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은행은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고유업무의 범위로 ①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②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③ 내국환·외국환을 규정하고 있다.

22) 이광열·강환우·김기범·박광빈·조민주, 앞의 연구보고서, 10면.

나. 부수업무

부수업무는 채무보증·어음인수, 상호부금 및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지급대행, 금고대행,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금융관련 연수 및 출판업, 금융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용 부동산 임대, 복권, 상품권, 입장권 판매를 들 수 있고 근거법령은 은행법 제27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1조 이다.

다. 겸영업무

겸영업무는 파생 상품의 매매·중개, 채권의 모집·매출,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투자자문 및 펀드 설립, 신탁 및 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M&A 중개 및 주선,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관련 상담과 조력을 들 수 있고 근거법령은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 이다.²³⁾

3.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비용절감과 이로 인해 창출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소비자 효용 증대 그리고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규모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실화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이라는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지점을 가진 은행에 비해 시간과 공간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고, 은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써 세계 경쟁 시장에 대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한다는 점과 수익성 저하가 발생했을시 부실화에 따른 실패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라도 업무범위를 어떻게 산정하여 수익을 적절히 내면서 고객들의 거래도 보호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23) 서병호, 앞의 연구보고서, 52면.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일반은행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할때 기업대출, 방카슈랑스 등 접포를 통한 대면 심사나 설명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상 고객의 거래 안전 보호 및 시장경제 질서를 혼란케할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제한해야 하겠지만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인가 과정에서 역량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자는 의견도 강한 상황이다.²⁴⁾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한에 관해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살펴보고 위에서 다룬 해외 사례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환경에 적합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 업무범위 제한 찬성론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와 대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비대면에 따른 소비자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실제로는 인가 과정에서 업무범위를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한정하여 조건부로 인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기준의 업무범위를 적용하면 안되는데 근거로 물리적 점포가 없기 때문에 특화된 전문적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생존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특화된 사업계획이 존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한 사례가 많으므로 일반은행과 같이 업무범위를 넓히기 보다는 특수한 영업형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업무범위 제한 반대론

업무범위를 제한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24) 서병호, 앞의 연구보고서, 58면.

수 있다.²⁵⁾ 해외 주요국 및 국내 온라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봤을 때 업무범위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 없이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인가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더라도 특화된 사업을 가질 경우 수익창출의 기대효과와 생존율이 높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애초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제한하여 일반은행에 비해 축소 시킨다면, 기존 인터넷뱅킹과의 차별성도 떨어지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본래 도입 취지도 퇴색시켜 결국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기존 은행과 동일하게 폭넓게 인정하되 점포를 통해야만 하는 업무나 기업대출 등 신중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한해서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 법령으로 제한을 하면 족할 것이라 판단된다.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그 안에 경쟁력을 위해 특화된 사업을 가지면 될 것이고, 고객의 거래 안전 및 시장경제 질서 안정을 위해서 법으로 제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하위법령으로 인가시에 제한을 가하면 되리라 보여진다.

4. 소결

인터넷전문은행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범위에 관한 해외 사례 및 우리나라 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현행 제도를 함께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비교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업무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다루어 보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한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다소 차이를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업무범위를 인가과정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자는 것에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인터넷전

25) 김경환,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운영사례와 국내도입시의 설립규제”, 삼성증권·법무법인 민후, 2015, 25면.

문은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이 규제를 완화하여 융통성있게 수익창출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 지고, 이에 세계 경제 흐름과 은행산업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 완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엄격히 규제를 적용하여 업무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방해할 여지가 크므로, 해외 사례와 우리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최소한으로 규제를 적용해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면 필연적으로 대면을 요하는 업무, 신원보증을 엄격히 해야 하는 업무 등은 그에 맞게 유동적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IV. 업무범위에 관한 법적 제안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해외의 사례 및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비교·분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업무범위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업무범위에 관한 사전규제 최소화

진입희망자의 구체적 사업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업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에 과도한 사전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범위에 관하여 사전규제를 최소화 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적용하고,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을 유도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대면 영업 방식은 제한해야 할 것이다. 영업점의 경우, 전면 허용하지 않

는 것보다는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영업점 기능은 일반은행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및 비현금 서비스 등으로 제한하며 사실상 일반은행과 동일해질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최소화 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영업점에 의한 대출 실행 또는 예금 수취, 현금인출 등 현금이 수반되는 업무는 제한하되²⁶⁾ 영업점의 인터넷을 활용한 상품신청, 계좌이체,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안내 및 상품 홍보 등은 허용하는 방안이 있겠다.²⁷⁾ 아울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예외를 인정하여 신용카드업 겸영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²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도입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이 창출되며,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방성과 더불어 반드시 금융소비자의 거래안전과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인가시 법령을 통한 제한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에 의할 때 일반은행의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또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수익모델의 출현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면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환경에 알맞게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향후 시스템 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인가시 일부 업무를 제한한 사례²⁹⁾가 있다. 법인대출은 여신

26) 단, CD/ATM 기기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 한다.

27)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 6면.

28) 안수현, “금융소비자측면에서 I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이슈 검토-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5, 28면.

심사 역량을 감안하여 스스로 취급하지 않는 등 법적 제약과 상관없이 일부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³⁰⁾ 즉,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전반적으로 일반은행과 업무범위가 동일하나 필요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에, 그 특징을 감안하여 반드시 점포를 통한 대면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에는 유동성을 두어 업무에 제한을 가해야 할 것이다.³¹⁾

3. 업무범위 제한 기준

업무범위 설정시 제한 기준으로,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담이나 평가 및 오프라인 거래관계 등이 필요한 경우, 영업망 또는 자본력 등을 고려해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유동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단시일 내에 경영위험이 증대되거나 시장안정성의 훼손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은행의 고유업무 중 외국환 거래의 경우 소규모 특화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외화유동성 및 환율위험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³²⁾

한편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있어서 기업대출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³³⁾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지급결제, 외환업무, 저축 등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업무범위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거나 유동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국가들과는 상반된 것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뱅킹과의 차별성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특화된 서비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탄

29) 예 : 사업계획 내에서만 업무영위

3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연구보고서, 6면.

31) 법인대출 및 기업대출의 경우 해외에서도 일부 업무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2) 김동환, “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 도입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자료, 2015, 29면.

33) 이광열·강환우·김기범·박광빈·조민주, 앞의 연구보고서, 16면.

력성있게 확대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립 이전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을 검토해 인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점포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프랑스의 Hello Bank³⁴⁾처럼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활성화가 예상된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볼 수 있어 국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거라 본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그 자체 효과만으로 약 2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네덜란드의 ING Direct 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³⁵⁾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차별화된 사업모델³⁶⁾로서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존 일반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의 개선노력을 촉발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 적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거래안전 및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로 운영이 되는 만큼 영업점포를 통한 대면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 경우는 업무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34) 100% Mobile - Only Bank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형태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3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연구보고서, 14면.

36) 일본의 Rakuten Bank의 경우 전자상거래기업의 계열사로서 업계 최초로 송금수수료 무료화, 계열사 물건구입시 현금포인트 제공 등 지급결제업무에 특화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범위에 관한 은행법 개정을 검토한 후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8년 당시에는 은행법 개정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인가 근거만 두고 영업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 정도로 그쳤고, 법안소위 논의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³⁷⁾ 현재 핀테크 열풍과 급변하는 글로벌 은행 산업의 환경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성공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은행법 개정 및 추진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역량과 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이루어 세계 경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서진,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국내 이슈 점검”, KB 지식 비타민, 73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 김경환,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운영사례와 국내도입시의 설립규제”, 삼성증권·법무법인 민후, 2015
- 김동환, “인터넷전문은행제도의 도입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자료, 2015.
- 김보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과 과제”, 2008
- 김희락,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과 전망”, 대은경제리뷰 199호, 2005
- 서병호,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5
- 안수현, “금융소비자측면에서 I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5

37) 2008년 당시 정부위 검토의견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무산 이유로, 은행건전성의 추가 악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 기인한다.

- 이광열 · 강환우 · 김기범 · 박광빈 · 조민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성공 전략과 해결과제”, Issue Monitor, 삼정KPMG경제연구원, 2015
- 정윤성,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전망”, 2006
- 전용식 · 황인창, “국내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KiRi Weekly, KiRi 보험연구원, 2015
- 조동환 · 이호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요인과 국내 도입시 고려요인에 관한 다중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
- 천대중,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및 전망”, WFRI 금융경제 포커스, 제20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
- “은행 분야 중장기 검토과제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금융위원회, 2014.
- “IT · 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business scope of Internet Primary Banks

Jung, Sang-pyo

Ph. D. Cour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 the consumer's sensitivity on interest rate is increased in low interest rate trend with the developments of ICT, IT and FinTech, and popularization of Internet introduction, the demand for Internet Primary Bank which provides the specialized services is increasing.

In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uggested the foundation of Internet Primary Bank as one of 'Financial Regulatory Reform task proposals' in July, 2013. Recently in 2015, as the head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each monetary authorities etc said they would review deregulation possibilities for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Primary Bank as amid-to-long-term project, the domestic interest level has been increased. Finance Services Committee tries to apply the same regulatory standards of the business practices with the commercial banks on the business scope of Internet Primary Bank since they are able to run the business in the same scope.

As Internet Primary Bank has the feature of non-face-to-face business, there is an opinion to ban the important tasks which must require face-to-face practices. Also, there is an opinion to allow them to practice the same tasks with other commercial banks and to control them upon identifying each characteristic during the processes of review and authorization, rather than strictly limiting the business. Looking into the pros and cons regarding the limitations of business scopes for Internet Primary Bank, it seems to make consensus somewhat to limit them within the necessary scopes only upon reviewing during the authorization process, rather than limiting the scopes strictly under the legal boundary. Some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Europe regulate the business scope of Internet Primary Bank with the same levels of commercial banks, however, they decide the business models or approve them under the conditions of keeping specific businesses considering the specialty, capital, and commercialization possibilities of the mother companies during the authorization process.

In the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legal proposals including Banking Law amendments so as to establish the proper business scope in our environment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ystems on the business scope of the banks in Korea and the cases of the foreign Internet Primary Banks, based on discussion related to the business scope of Internet Primary Banks.

Key words : Internet Primary Banks, Foreign banks, Banks, Internet Banking,
the business scope